

◎ 대통령령 제14,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1995. 4. 2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본문·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전단중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을 각각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전단중 “필요가 있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4항·제5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가목(5)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목(7)의 (라)를 삭제한다.

별표 1 다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250만제곱미터이상인것”을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5)의 (가)중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1 아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자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다음 사업”을 “하천법 제2조제1항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관리청이” 앞에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동란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목(1)의 (가)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카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목(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공고전”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하며, 동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음에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추가한다.

환경관리인. 1995. 6

별표 1 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스키장과 자동차 경주장은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총용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전
---	------------------------------

별표 1 과목중 (3)을 삭제하고, 동목 (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채순허가전”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렴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지협의 또는 입지승인전”을 추가한다.

별표 1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더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 조성사업을 기존의 공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위표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가. 주택지조성사업 : 위표중 가목(6)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 위표중 라목(2)
다. 도로건설사업 : 위표중 마목(1)

2.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지방환경청장관할”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관할”로 한다.

별표 2 제1호중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2 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인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체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p>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p>	<p>(1) 하천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2만제곱미터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p> <p>○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p>
-----------------------------	--	---

<p>(3)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면적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기타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p> <p>(4)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중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으로서 골재채취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p> <p>○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p> <p>○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전</p>
---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개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요청시기를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 중에 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함(영 제7조제6항).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광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채광면적이 2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에너지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함(영 별표 1다목).

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결과의 적정한 반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요청시기를 기본설계의 공고전에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변경함(영 별표 1카목).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의 묘지공원조성사업 및 경마장설치사업, 해안모래 채취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전적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함(영 별표 1 카목·타목·디목).

◎ 대통령령 제14,63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1995. 5. 1)

제 1 조(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먹는물수질감시원)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보건위생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 3 조(수원개발 허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원개발 위치·면적 등을 포함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시설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원개발지점의 주변으로 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일정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의 설치
2.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수원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기타 출입제한시설의 설치

제 4 조(먹는샘물제조업 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취수정의 증설 또는 이설
3. 1일 취수한도량(증가할 경우에 한한다)

제 5 조(수처리제조업 등록)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제 6 조(수입판매업 등록)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한 먹는샘물이 판매된 때에는 그 판매가격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 9 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로 한다.

제 10 조(부담금의 산출)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격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11 조(부담금의 납부시기·정수절차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들은 분기별 판매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

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자들에게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 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부가피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의 제한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 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 샘물의 광고가 수도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 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등)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처분사유·처분내용 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절차)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체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7.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8.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제조업의 유효기간 연장허

가

-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취소
-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 1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의 수리
-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 14.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 1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 1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시설철거 등의 명령 및 필요한 조치명령
- 17.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 18.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 1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 2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

-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 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 2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24.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 7.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를 삭제한다.
-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 제17조제1항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 ②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관련)

- 1. 적용기준
 -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중 영업정지 3월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와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년)	
	먹는샘물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수처리제제조업
30,000원	100이하	100이하
50,000원	100초과~ 120이하	100초과~ 120이하
70,000원	120초과~ 200이하	120초과~ 170이하
90,000원	200초과~ 340이하	170초과~ 250이하
110,000원	340초과~ 540이하	250초과~ 360이하
130,000원	540초과~ 800이하	360초과~ 500이하
150,000원	800초과~ 1,120이하	500초과~ 670이하
170,000원	1,120초과~ 1,500이하	670초과~ 870이하
190,000원	1,500초과~ 1,940이하	870초과~ 1,100이하
210,000원	1,940초과~ 2,440이하	1,100초과~ 1,360이하
230,000원	2,440초과~ 3,000이하	1,360초과~ 1,650이하
250,000원	3,000초과~ 3,620이하	1,650초과~ 1,970이하

기준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년)	
	먹는샘물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수처리제조업
270,000원	3,620초과~ 4,300이하	1,970초과~ 2,320이하
290,000원	4,300초과~ 5,040이하	2,320초과~ 2,700이하
310,000원	5,040초과~ 5,840이하	2,700초과~ 3,110이하
330,000원	5,840초과~ 6,700이하	3,110초과~ 3,550이하
350,000원	6,700초과~ 7,620이하	3,550초과~ 4,020이하
370,000원	7,620초과~ 8,600이하	4,020초과~ 4,520이하
390,000원	8,600초과~ 9,640이하	4,520초과~ 5,050이하
410,000원	9,640초과~10,740이하	5,050초과~ 6,200이하
430,000원	11,740초과~11,900이하	6,200초과~ 6,820이하
450,000원	11,000초과~13,120이하	6,820초과~ 7,470이하
470,000원	13,120초과~14,400이하	7,470초과~ 8,150이하
490,000원	14,400초과~15,740이하	8,150초과~ 8,860이하
510,000원	15,740초과~18,600이하	8,860초과~ 9,600이하
530,000원	18,600초과~20,000이하	9,600초과~10,000이하
550,000원	20,000초과	10,000초과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정 이유

먹는물관리법의 제정(1995.1.5 법률 제490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먹는샘물의 제조를 하기 위한 수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조업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허가 및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6조).

다.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퍼센트로 하고,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함(영 제8조 내지 제13조).

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끌거나 과열 광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매체 및 광고회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마. 먹는샘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사유·기일 및 장소를 7일전에 서면으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문절차를 정함(영 제16조).

바.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먹는물관련영업허가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먹는샘물제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먹는샘물수입검사 등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19조).

◎ 환경부고시 제1995-47호

환경개선지원자금운용관리요강(환경부고시 제1995-42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지원자금운용관리요강중개정

환경개선지원자금운용관리요강의 Ⅲ. 용자지원규모 및 대상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의 1)중 “환경기술(폐기물분야 제외)에”를 “환경기술에”로 하고, 동호 동목의 2)중 “환경오염방지기술(폐기물분야 제외)”를 “환경오염방지기술”로 한다.

제2호 나목의 1) 및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신기술 연구·개발

2) 오수·분뇨 또는 상·하수도처리에 관한 기술

◎ 환경부고시 제1995-5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5-32	(총칭명) 실록산과 실리콘, 디-메틸, 수소와 알칸산중합체의 염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gen polymer with alkenoic acid, salts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3	(총칭명) 아크릴산 알킬과 알킬 아크릴산의 중합물 Alkylacrylates, alkylacrylic acid copolymer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4	포름알데히드, 4-(1,1-디메틸에틸)페놀, 에폭시헥사데칸과 옥시란의 중합물 Formaldehyde polymer with 4(1,1-dimethyl-ethyl) phenol, epoxyhexadecane and oxirane [68784-99-6]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5	5-[[4-클로로-6-[[3-[[8-[[4-플루오로-6-(메틸페닐아미노)-1,3,5-트리아진-2-일]아미노-1-히드록시-3,6-디술포-2-나프탈렌일]아조]-4-술포페닐]아미노]-1,3,5-트리아진-2-일]아미노]-4-히드록시-3-[[1-술포-2-나프탈렌일]아조]-2,7-나프탈렌디술포산 나트륨염 5-[[4-chloro-6-[[3-[[8-[[4-fluoro-6-(methylphenylamino)-1,3,5-triazin-2-yl]amino]-1-hydroxy-3,6-disulfo-2-na-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phthalenyl]azo]-4-sulphonyl]amino]-1,3,5-triazin-2-yl]amino]-4-hydroxy-3-[1-sulfo-2-naphthalenyl]azo]-2,7-naphthalene disulfonic acid. sodium salt [155522-05-7]	
95-36	페놀, 알킬(C=18-30) 유도체와 이산화탄소, 페놀, 테트라프로펜일 유도체와 황의 반응생성물 칼슘염 Phenol, alkyl(C=18-30)derivs. reaction products with carbon dioxide, phenol, tetrapropenyl derivs and sulfur, calcium salts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7	<총칭명> 카르복실산과 에틸옥소헥실 옥시메틸 프로판올의 에스테르 Carboxylic acid ester with ethyloxohexyloxy methylpropanol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8	2-프로펜아미드, 2-프로펜산, 3-(디메틸아미노)-프로필메타아크릴 아미드와의 중합물 나트륨염 2-Propenamamide polymer with 2-propenoic acid and 3-(dimethylamino)-propylmethacrylamide, sodiumsalt	-유독물에 해당안됨
95-39	2-메틸-2-프로펜산, 2-메틸-2-프로펜산 부틸, 2-프로펜산 에틸과 2-메틸-2-프로펜산 메틸의 중합물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butyl 2-methyl-2-propenoate, 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30280-54-7]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5-40	<총칭명> 카르복실산과 메틸프로판올의 에스테르 Carboxylic acid ester with methylpropanol	-유독물에 해당안됨
95-41	N, N, N', N', N'', N''-헥사키스(메톡시메틸)-1,3,5-트리아진-2,4,6-트리아민과 에틸렌글리콜의 중합물 N, N, N', N', N'', N''-Hexakis(methoxymethyl)-1,3,5-triazine-2,4,6-triamine polymer with diethylene glycol [129217-87-4]	-유독물에 해당안됨
95-42	에틸 2-프로펜산 에스테르, 에텐과 에틸벤젠의 그라프트 중합물 Ethyl 2-propenoic acid ester polymer with ethene and ethylbenzene. graft [118497-07-7]	-유독물에 해당안됨
95-43	α, α' -메틸렌비스[ω -[3-(디메톡시메틸실일)프로폭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 α, α' -Methylenebis[ω -[3-(dimethoxymethylsilyl)propoxy] poly[oxy(methyl-1,2-ethanediyl)] [70788-42-0]	-유독물에 해당안됨
95-44	디페닐 아미도부틸 인산 Diphenyl butylamidophosphate	-유독물에 해당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합본

- '79~'94년
- 총 8 권, 400,000원(권당 50,000원)

◀ 한국폐기물학회지 합본

- '84~'92년
- 총 2 권, 100,000원(권당 50,000원)

◀ 한국수질보전학회지 합본

- '85~'94년
- 총 4 권, 200,000원(권당 50,000원)

• 동화기술 [문의 : (02)766-6671~5]

◎ 환경기술개발 현황

◆ 수질분야

번호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주 관 기 관	수행기간	금액(백만원)	주 요 내 용
37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 기술 개발(Ⅱ-1)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92.		• 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한 원단위를 현지조사 및 실험을 통하여 산출하고, 기존자료 및 문헌상에 보고된 원단위 비교 검토
38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 기술 개발(Ⅱ-2)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92.		• 하천의 수질예측 및 목표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사각량 산정 등을 위해 BOD, T-N, T-P 조사
39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 기술 개발(Ⅱ-3)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92.		• 소규모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가축폐수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사각 방법의 선정기준 및 적정처리공법의 선정, 그리고 이를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여 수질개선 효과 예측
40	항공다중분광주사법에 의한 환경감시 기술연구	한국자원연구소	과학기술처	93.10~94.10	76.0	• 항공다중분광주사법에 의한 환경감시기술 연구
41	항공다중분광주사법에 의한 환경감시 기술연구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91.8~94.10	80.0	• 항공원격탐사에 의한 수질오염 분포도 작성기법 개발
42	PET 알칼리 감량 가공공정의 공해저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92.10~94.10	200.0	• PET 알칼리 감량폐수의 COD 저감 및 폐자원의 재활용
43	RBC-Settling Tank System을 이용한 폐수처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9.12~90.12	4.0	• 기존의 회전원판법(RBC)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처리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회전 원판법과 침전조를 한 반응조에 연결한 RBC-Settling Tank System의 제시
44	The Study on the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and Recycling Project in th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JIC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1.1~93.9	1000.0	• 일본과의 공동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염색 및 도금공단의 폐수처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폐수처리의 개선 및 재이용을 위한 프로세스의 제시 및 향후 염색 및 도금폐수처리 및 재이용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시 가이드라인 제시
45	감압진공 증류법 폐수처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처	92~94		• 염색폐수는 배출폐수의 온도가 높고 색도처리의 어려움이 있고 배출폐수재이용을 위해 감압증류방식을 폐수의 처리에 응용방안 검토(폐수의 농축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등점 상승이나 열교환기 벽면에 스케일이 잡히게 형성되는 문제)
46	고농도 염소이온 함유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서울보건전문대	환경처	88~89	3.0	• 고농도 염소이온 함유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47	고농도 유기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2.11~93.11	64.0	• UASB와 AFB의 고농도 유기폐수처리에 적용

번호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주 관 기 관	수행기간	금액(백만원)	주 요 내 용
48	고신축성 멤브레인 산기관 개발	효림산업(주)	환경관리공단	94.1~94.12	45.0	• 폭기조용 고효율 산기장치 제작
49	고정상 접촉여재 BIO-Q (외2건)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화	거진산업(주)	환경관리공단	93.10~94.2	345.3	• MEDIA UNIT 를 이용한 어·폐수정화처리장치(외2건) 의 생산설비
50	고효율 수처리 개발	신도건공(주)	환경관리공단	93.12~95.8	385.0	• 고효율, 저농도 간편 수처리 개발
51	난분해성 고농도 유기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처	92~94		•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피혁 폐수의 전처리 • 분리막이용 생물반응기를 이 용한 후 처리 • 전기용집을 이용한 부유물결 제거
52	난분해성 산업폐수처리공정 개발	(주)화랑환경	환경관리공단	94.1~94.12	100.0	• 미생물 분해가 어려운 염색, 식품, 화학폐수등의 COD 처리
53	난분해성 염색폐수 처리 효율 증진기술 개발(I)-(II)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처	91~93	110.0	• 염색폐수의 혐기, 호기성 처 리 신공정 개발 • 각종 색소화합물 분해균주의 분리 • PVA 등 조염제 분해균주의 분리 및 생물공학적 활성증진
54	대수면 양식장 오염물질 저감기술개발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93.		• 경기도 남양주 및 양평군 지 역의 양식장에 대한 유입수, 유 출수, 처리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를 항목에 따라 평가 분석 • 가두리 양식장 및 유수식 양 식장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실 험 실시하여 양식장 종류별 오 염물질 배출특성조사
55	농어촌 소규모 공단 및 공단의 오·폐수 처리기술	충북대학교	환경처	88~89	3.0	• 농어촌 소규모 공단 및 공단 의 오·폐수 처리기술
56	도금공장용 고속폐수처리장치 개발	정림DSP산업(주)부 설정림기술연	상공자원부	92.8~94.7	96.9	• 도금공장용 고속폐수처리장 치 개발
57	도금공정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개발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92.11~93.11	55.0	• 도금공정에서 폐기되는 물질 로부터 유가금속(아연, 크롬) 회수 기술개발
58	도금폐수로부터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한국자원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89.12~91.1	18.0	• 기존 도금폐수 처리현황, 방 류기준 현황, 폐수발생 현황 및 처리비현황, 유가금속회수 신 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방향제 시
59	맥반석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환경처	89~90	3.0	• 맥반석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60	먹이연쇄를 이용한 수처리기술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93.		• 초식성 어류인 초어에 의한 수초제어기술 • 백련어 성장율, 미생물적 변 화, <i>Daphnia magna</i> (동물성플랑 크톤)를 이용한 수질개선등 기 초 자료 축적

(자료제공 : 환경관리공단)